

거창군보도구역내횡단차도설치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

의안 번호	2001~30
----------	---------

제출연월일 : 2001. 7 . .
제 출 자 : 거 창 군 수

폐지사유

- 현재까지 실적이 없어 유명무실하며,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어 행정규제개혁의 일환으로 존치의 필요성이 없어 이를 폐지코자함.

주요골자

- 거창군 보도구역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는 1973.9.4 조례 제234호로 제정되어 1984.1.24 조례 제747호로 1차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으나,
- 보도구역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민원사항이 현재까지 단 1건도 처리된 사실이 없으며,
- 도로법 제31조 및 제64조 「공무원인자에 대한 공사시행 명령의 기준과 원인자 부담금의 부과징수」에 규정하고 있어 더 이상의 존치의 필요성이 없으므로 2001년 잔존규제 정비계획의 일환으로 이를 폐지코자함.

폐지근거

- 도로법 제31조 및 제64조
- 2001년 자치법규정비계획(2001.6.29)

거창군보도구역내횡단차도설치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

거창군보도구역내횡단차도설치에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